학생 징계 지침

제정일 : 2017. 6. 8.

제1조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2.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제2조 (징계의 발의) 제1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지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본인 진술서 1부
2. 사건 경위서 1부
3. 지도교수 의견서 1부

제3조 (징계의 종류 및 기준)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근신 : 5일 이하
3. 유기정학 : 3주 이하
4. 무기정학 : 1개월 이상
5. 제적

② 징계양정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경고 또는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재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처분한다.

제4조 (봉사명령 및 상담) ①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 1항의 징계처분을 하기 전 장학지도위원회에서 봉사명령 및 상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하기 전 봉사명령 및 상담이 적절히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

③ 봉사명령 및 상담 등 필요한 조치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징계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제3조 제1항의 징계와 더불어 봉사명령 및 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

⑤ 제4조 제1항의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제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의 효력) ①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징계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② 근신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6조 (장학지도위원회 징계 심의절차)

①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제2조(징계의 발의)에 의하여 발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한다.

④ 주소 또는 소재의 불명, 전항 통지의 반송 등으로 인한 통지 불가, 학생의 회의 출석 포기 또는 불출석의 경우, 학생의 출석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관계인, 전문가, 지도교수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선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장학지도위원장은 징계사항을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학부모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지도)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무기정학의 해제)

① 지도교수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반성 정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도 결과보고서 및 무기정학 처분 해제 의견서를 학장을 경유하여 장학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장학지도위원회는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무기정학의 해제를 심의하여 의결하고 총장에게 품의한다.

③ 무기정학의 해제는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10조 (징계기간 중의 휴학)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 휴학을 할 수가 없다.

제11조 (징계기간 중의 등록)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에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물손괴 등에 대한 배상청구) ① 대학은 학교 시설물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손해액에 상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장학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징계의 재심의) ①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전항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장학지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다.

1.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후 재심의할 만한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③ 전항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학지도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당초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14조 (기록말소)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본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울 경우 장학지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기록말소를 품의할 수 있다.

제15조 (부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장학지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3조의 2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1. 학생의무 위반				
가. 학생회비 횡령 및 무단사용	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	제적
나. 강압적이고 부당하게 타 학생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근신	유기정학-근신	무기정학	제적
다. 수업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	근신	유기정학-근신	무기정학	제적
라. 시험 및 각종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	근신	유기정학	제적-무기정학	제적
마. 각종 제 증명서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	근신	유기정학	제적-무기정학	제적
바. 학교 시설물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근신	유기정학-근신	무기정학	제적
아. 그 밖의 학생의무 위반	근신	유기정학-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
2. 학생품행유지 위반				
가. 성희롱	무기정학	제적-무기정학	제적	제적
나. 성매매	무기정학	제적	제적	제적
다. 성폭력	무기정학	제적	제적	제적
라.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	제적
마. 상습적이고 심각한 문자·언어적 폭력	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	제적
바. 각종 법·질서를 위반	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	제적
3. 개인정보법 위반				
가.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	제적
나.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근신	유기정학-근신	무기정학	제적
다. 그 밖의 개인정보법 위반	근신	유기정학-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
4. 학칙 및 규정 준수 위반	근신	유기정학-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
5. 불법영리행위 금지 위반	근신	유기정학-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
6. 집단행위 금지 위반	근신	유기정학-근신	정학	제적-무기정학